

## 2023년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 채용 공고

「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」에서는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단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겸비한 인재들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3년 4월 17일

(재)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장

### 1. 채용개요

가. 채용형태: 계약직

나. 계약기간: 임용일로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

다. 채용예정일: 2023년 6월 중 임용 예정

\* 근무평가에 의해 계약 관계 갱신

라. 채용계획

응시직위	채용형태	인원	비고
단장	계약직	1명	

마. 담당업무(안)

구 분	주요업무
단장	- 지역사회서비스 지원단 사업운영 총괄 ·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관리 · 신규사업 발굴·개발, 사업구조 조정 등

### 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## 가. 공통요건(공고일 기준)

- 응시연령: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인 자
- 거주지: 제한 없음
- 성별제한: 없음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)
- 임용예정일로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
-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

구분	응시자격	비고
제주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	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	공통[참고1]
	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	단장 결격사유[참고2]

### 【참고1】 제주사회서비스원 인사규정 제8조
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피성년후견인</li> <li>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</li> <li>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</li> <li>7.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서 규정한 횡령 및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8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서 규정한 성폭력 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9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</li> <li>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</li> </ol> </li> <li>10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11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12.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</li> <li>13. 공직자 및 「공직자 윤리법」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·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/ol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**【참고2】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(시설의 장)**

-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제19조(임원의 결격사유)제1항제1호, 제1호의2부터 제1호의9까지 및 제2호의2부터 제2호의 4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li> <li>제22조(임원의 해임명령)에 따른 해임명령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li> <li>사회복지분야의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다 퇴직한 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기초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시설의 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</li> </ol>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
**나. 자격기준(공고일 기준)**

○ 다음의 자격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

구분	자 격 기 준
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또는 6급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■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시설 또는 유관기관·단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■ 사회복지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사회복지 업무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ul>

- ※ “공공기관 관련업무” 범위: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및 제5조, 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공공기관(지방자치 단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법인, 기관 및 단체 포함), 「지방공기업법」에서 정한 지방 공기업,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출 자·출연 기관의 기획, 예산, 회계, 인사, 노무, 사회서비스 업무
- ※ “사회복지시설” 및 “유관기관·단체” 범위: 보건복지부 지침 「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」의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 호봉 확정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

**다. 가점기준(우대사항)**

구 분	대 상	우대요건	가점	증빙서류
취업지원 대상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</li> <li>·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9조</li> <li>·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20조</li> <li>·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9조</li> <li>·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3조</li> <li>·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</li> </ul>	면접 각 항목 40% 이상 득점 시	법령에 따라 면접의 5% 또는 10%	공고일 이후 국가보훈 처장이 발행한 증명서

장애인	· 「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 제2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한 자		면접 총점 5%	장애인 등록증 (장애인 증명서)
사회적 취업 취약계층	·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(①) ·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(②) · 청년 미취업자(만34세 이하)(③)	동점자 발생 시 우대		증명서
<p>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가점은 관련법률의 적용기준을 따름</p> <p>○ 가점은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 적용됨(중복 적용 불가)</p> <p>○ 인·적성 검사는 가점을 부여하지 아니함</p> <p>○ 사회적취업 취약계층의 경우, 면접시험 동점자 발생 시 ①→③ 순으로 우대</p> <p>※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시원서 접수 시 해당하는 내용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함.</p> <p>※ 가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 인원의 30%를 초과 할 수 없음. 다만, 응시자의 수가 선발 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</p>				

### 3. 보수 및 근무조건

가. 근무시간/근무지: 주40시간(1일 8시간, 주5일근무)/제주사회서비스원

나. 보수수준: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규정 제9조 준용

구분	상한액	하한액	비고
단장	62,217,636원	32,218,656원	내부규정에 따라 경력환산 후 상·하한액 범위내에서 연봉 산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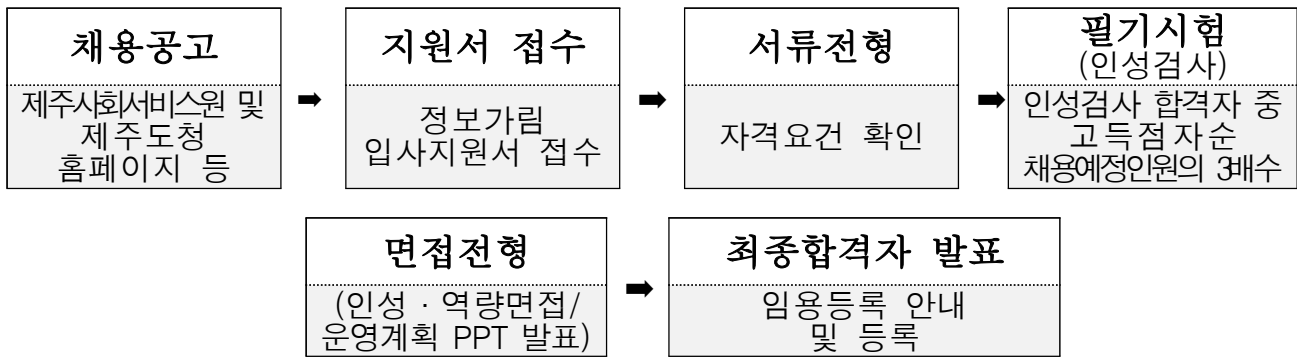
\* 보수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,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

다. 정년: 만60세

### 4. 시험단계 및 채용절차

가. 채용방법: 정보가림 및 공개경쟁채용

## 나. 채용절차



※ 전(前) 단계의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전형 단계의 응시자격 부여

## 5. 시험세부내용

### 가.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

#### 1) 채용공고

- 공고기간: '23. 4. 17.(월) ~ 4. 27.(목)
- 공고장소: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, 제주도청 홈페이지 등

#### 2) 지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'23. 4. 18.(화) ~ 4. 27.(목) 18:00 마감
- 접수방법: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(jejupass@jeju.pass.or.kr)
- 제출서류: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
- 기타사항: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(월~금 09:00~18:00)에만 가능함  
(※주말, 공휴일, 점심시간 12:00~13:00 접수불가)
- 문의전화: 070-8805-4883/4887(민간협력팀)

### 나. 서류전형

#### 1) 심사방법

- 응시자의 제출서류를 확인하여 응시자격 적격여부 결정  
 ※ 응시자격 부적격, 제출서류 미비자를 제외한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을 대상으로 필기 시험 전형 응시기회 부여

#### 2) 합격자 결정

평가항목	합격자 결정 기준	비 고
· 응시자격 적격/부적격 여부	· 채용분야 응시자격이 "적격"인 자	

### 3) 서류전형 합격자 및 필기시험 대상자 통지

-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: '23. 5. 8.(월)
- 통지방법: 제주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

## 다. 필기시험(인성검사)

### 1) 일자 및 장소

- 일 자: '23. 5. 15.(월)
- 장 소: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

### 2) 대상 및 필기시험 방법

- 대 상: 서류전형 합격자 전원
- 출제방법: 채용대행업체 인성검사 문제지활용
- ※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 중 하나) 반드시 지참. 미지참 및 본인확인 불가 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
- ※ 개인필기도구(볼펜, 수성싸인펜, 수정테이프) 반드시 지참

### 3) 합격자 결정

#### ○ 합격기준

- 인성검사 신뢰도가 70점(100점 만점) 이상인 자
- 정신건강 점수가 40점(100점 만점) 이상인 자
- 인성 평균점수가 60점(100점 만점) 이상인 자
- 부정적 성향, 반사회성, 집단화 성향의 점수가 각 60점 미만인 자
- 동점자 처리기준: 모두 합격(※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 까지로 하며, 나머지는 절사)

- 선발인원: 고득자점순 3배수 선발

### 4)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통지

-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: '23. 5. 17.(수)
- 통지방법: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

## 라. 면접전형

### 1) 일자/장소 및 시험위원

- 일 자: '23. 5. 26.(금)
- 장 소: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

○ 면접위원: 3명(내·외부위원)

2) 면접방법

구분	면접 평정요소	배 점
면접 (50%)	① 공적 책무성 ② 이해력·지식수준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인성 및 직업관 ⑤ 창의성 및 전문성	50점
발표 (50%)	*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계획 ①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의 비전 ②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및 관리계획 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활성화 방안 ④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	50점

※ 운영계획서 발표(PPT 15분 내외)

※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,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, 나머지는 절사

○ (예비합격자 제도) 각 채용직위별 2배수(차순위 득점자)

※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, 임용 후 중도 퇴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거나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예비합격자(면접전형 고득점자 순) 순번(선발인원의 2배수 이내)에 따라 추가 임용할 수 있음.

**6. 채용일정**

구 분	일정	비 고
채용공고	'23. 4. 17.(월) ~ '23. 4. 27.(목)	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및 제주도청, 유관기관 등 홈페이지 공고
지원서접수	'23. 4. 18.(화) ~ '23. 4. 27.(목)	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'23. 5. 8.(월)	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안내
필기시험 (인성검사)	'23. 5. 15.(월)	

필기시험 (인성검사) 합격자발표	'23. 5. 17.(수)	
면접시험	'23. 5. 26.(금)	
최종합격자 발표	'23. 5. 30.(화)	
임용예정일	'23. 6월 중	

※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전형 단계별 일정 공고 시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

## 7. 제출서류

- 접수기간: '23. 4. 18.(화) ~ 4. 27.(목) 18:00까지
- 접수방법: 방문 및 전자우편 접수(jejupass@jeju.pass.or.kr)
- 제출서류: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등
- 기타사항: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(월~금 09:00~18:00)에만 가능함  
(※주말, 공휴일, 점심시간 12:00~13:00 접수불가)
- 문의전화: 070-8805-4883/4887(민간협력팀)

구분	내용	비고
필수	1. 응시원서 [서식1] 2. 자기소개서 [서식2] 3. 직무수행계획서 [서식3] 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동의서[서식4] 5. 주민등록 초본(주민등록등본 미인정) * 공고일 이후 발행 * 남성 응시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 필수 (초본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) *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표기로 발급 제출	
해당자	1. 재직/경력 증명서 (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기재) 2.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(재직·경력 확인용) 3. 졸업증명서(최종학력증명서) 4. 자격증 사본	



	1. 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2. 장애인 증명서 3. 사회적취업 취약계층 증명서	
필기시험 합격자	1. 운영계획서[서식5] (면접전형 시 사용) - 운영 비전, 운영관리 계획, 홍보 활성화 방안,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 - 출신지역, 가족관계, 학교 등 암시하는 내용 금지 - A4용지 5매 이내로 본인이 직접 작성 2. PPT 발표자료(발표 15분 이내) - 운영계획서 기반 작성, 불필요한 내용 작성금지 - 도식화, 표, 그림 활용, 글 최소화 - 객관적인 자료, 자료출처 명시	면접 전일 18시까지 메일 제출
최종 합격자	1.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2. 가족관계증명서 3. 주민등록등본 4. 일반채용신체검사서 5. 후견등기사항부존재 증명서 6. 6개월 이내 반명함 사진 1부(3*4cm)	합격일 이후 발행

※ 정보가림 채용을 위하여 응시원서, 자기소개서, 직무수행계획서 작성 시 연령, 성별, 출신 지역, 출신학교 등이 노출 되지 않도록 주의바라며, 노출시 불합격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

※ 최종합격이후 재직 및 경력증명 내역 수정 불가

※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 서류의 불일치,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증빙서류의 위·변조 판명 시 합격 및 임용 취소

## 8. 최종합격자 결정 및 통지

### 가.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

구분	면접 평정요소	합격자 결정 기준	비고
면접 (50%)	① 공적 책무성, 지역사회 서비스지원단의 목적성 부합여부 ② 이해력 및 지식수준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	· 평정요소별 모든 시험위원의 점수를 산술 평균 후 <b>60점 이상</b> 득점자 중, <b>고득점자 순</b> <b>【동점자 처리】</b> - 1순위: 취업지원대상자 - 2순위: 장애인	

	논리성 ④ 인성과 직업관 ⑤ 창의성 및 전문성	
발표 (50%)	*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계획 ①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의 비전 ②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및 관리계획 ③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홍보활성화 방안 ④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방안	- 3순위: 사회적취업취약계층(①→③) - 4순위: 발표 평정요소 고득점 순 (①→②→③→④) ※ 면접전형 결과 시험위원 평균 점수 6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하며,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반영하고, 나머지는 절사

## 나. 최종 합격자 통지

- 합격자 발표: '23. 5. 30.(화)
- 통지방법: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안내

## 다. 임 용

- 임용예정일: '23. 6월 중
- (재)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원장과 고용계약 체결

## 9. 응시자 권리보호 제도안내

### 가. 이의신청 절차 안내

- 접수기간: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7일 이내
- 접수방법: “채용결과 이의 신청서”[별지 제1호 서식]를 작성·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민간협력팀으로 제출
- 예외사유\*\*가 아닌 경우,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답변 처리
- \*\* 【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】
- 채용시험과 무관한 질의사항, 개인정보(응시자, 시험출제자, 평가관련자)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

## 나. 채용서류 반환

- 운영근거: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제11조
- 청구기간: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 이내
- 접수방법: “채용서류 반환 청구서”[별지 제2호 서식]를 작성·서명한 후 사회서비스원 민간협력팀으로 제출
- 반환방법: 입사지원서의 주소지로 등기우편 발송(비용은 청구인 부담)

## 10. 기타사항

- 가.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홈페이지에 공고하므로 수시 확인 바랍니다.
- 나. 서류전형, 필기시험,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는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다. 정보가림 채용에 따라 입사지원서 작성 시, 직·간접적으로 학교명, 가족관계, 출신지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, 발견될 경우 전형별 단계에서 임의로 가림 처리됩니다.
- 라. 입사지원서·자기소개서 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·위조인 것으로 확인되거나, 고의로 누락·추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마.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는 즉시 합격이 취소되며, 향후 사회서비스원의 모든 시험에 응시를 제한합니다.
- 바.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, 연락불통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  - \* 가점 확인 및 자격 확인용 증빙자료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.
- 사. 채용 결과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- 아. 최종 합격자의 근무지역은 제주특별자치도이며, 임용 후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가 가능하여야 합니다.
- 자. 임용 예정일 이후 출근이 가능하여야 하며, 정상적으로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차. 입사지원서 접수마감 후에는 기재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없습니다.

- 카. 채용서류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, 불합격자는 「채용절차의 공정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에 따라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청구서가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청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타. 지원자격 요건 심사 및 급여 반영을 위한 경력 기간은 입사지원 시 제출한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서류 적부심사 시 결정되며, 입사지원서 제출 이후 추가제출 서류는 불인정 합니다.
- 파. 그 밖에 문의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민간협력팀 (070-8805-4883, 4887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**제주사회서비스원은 채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 청탁을 받지 않으며, 부정합격이 확인되는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**